

KLSI

ISSUE PAPER

제107호
2019-6호
(2019.05.07.)

www.klsi.org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목차]

1. 머리말
2. 시간당 최저임금
3.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4. 최저임금 인상률
5. 최저임금과 국민소득
6. 최저임금과 빈곤선
7. 맺는말: 요약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50(충정로3가, 골든브릿지빌딩) 3층

전화 02) 393-1457

팩스 02) 393-4449

WWW.facebook.com/ksiedit

< 요약 >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WSI(독일 경제사회연구소)의 최신 자료를 사용해서,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을 다른 OECD 국가와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2017년 5.7달러, 2018년 5.9유로, 2019년 6.4유로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2019년에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6.4유로)이고, 순위는 25개국 중 12위로 중간이다([표 1] 참조).
- 둘째,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17년 41.4%로 OECD 평균(41.1%)과 거의 같고, 법정 최저임금 제도를 운용하는 29개국 중 15위로 중간이다. 중위값 기준으로는 52.8%로 OECD 평균(52.5%)과 거의 같고, 29개 회원국 중 13위로 중간이다([표 1] 참조).

[표 1] 시간당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비율

| | 시간당 최저임금 | | | | | | 최저임금 비율 | |
|--------|-------------|-------|---------------|-------|---------------|-------|----------|-------|
| | 2017년(US\$) | | 2018년 1월(유로화) | | 2019년 1월(유로화) | | 2017년(%) | |
| | 환율 | 구매력 | 환율 | 구매력 | 환율 | 구매력 | 평균값 | 중위값 |
| 한국 | 5.7 | 6.4 | 5.9 | 5.8 | 6.4 | 6.4 | 41.4 | 52.8 |
| OECD평균 | 6.2 | 6.7 | 6.2 | 6.3 | 6.4 | 6.3 | 41.1 | 52.5 |
| 한국순위 | 14/29 | 15/29 | 13/25 | 13/25 | 12/25 | 12/25 | 15/29 | 13/29 |

자료: OECD.Stat 2019년 5월 4일 추출; WSI, Minimum Wage Report 2018 & 2019.

주: 최저임금 비율은 풀타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임.

- 셋째,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리 수인 OECD 회원국은 2018년에 한국(16.4%), 터키(14.2%), 라트비아(13.2%), 체코(10.9%), 슬로바키아(10.4%) 다섯 나라고, 2019년에는 리투아니아(38.4%), 터키(26.0%), 스페인(22.3%), 캐나다(12.6%), 한국(10.9%) 다섯 나라다. 비회원국 중 루마니아는 2018년에 최저임금을 52.0% 인상했다.
- 넷째, 국민소득과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다. 이는 최저임금의 절대수준(시간당 최저임금)은 국민소득이나 경제발전의 영향을 받지만, 최저임금의 상대수준(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국민소득이나 경제발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노사 교섭력, 집권정당의 성격, 사회문화 가치 등 경제외적 요인의 영향을 받음을 말해준다.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1.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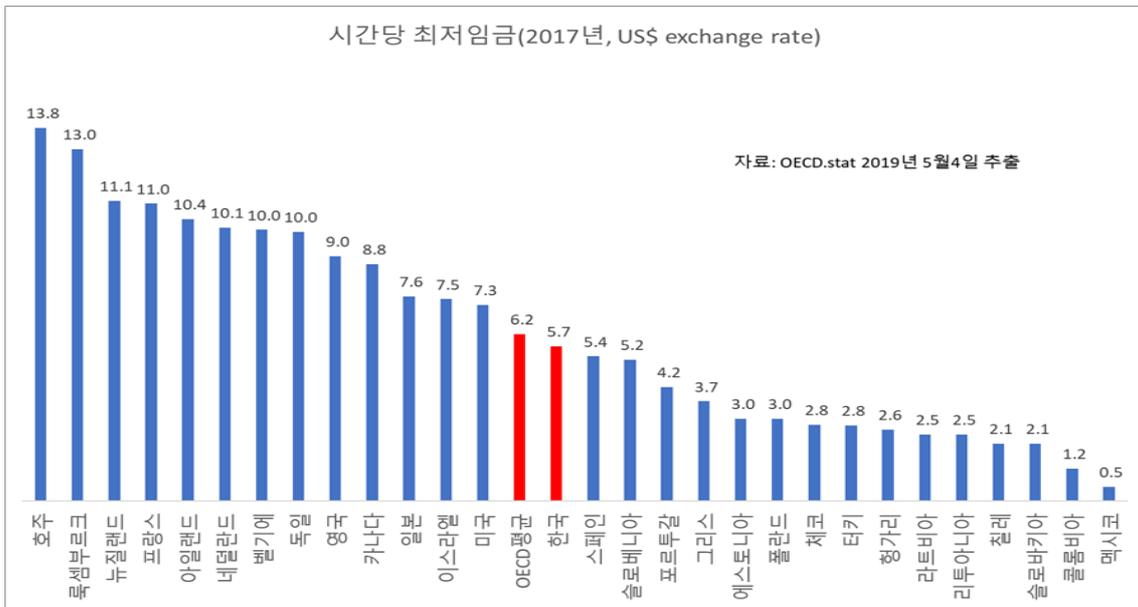
- 이 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WSI(독일 경제사회연구소)의 최신 자료를 사용해서,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을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 OECD 회원국의 최저임금은 2019년 5월 4일 기준으로 OECD.Stat에서 내려 받은 자료를 사용했다. OECD.Stat에서는 2017년까지 자료를 구할 수 있고, 우리의 관심사인 2018-19년 자료는 구할 수 없다. 따라서 2017년 최저임금은 OECD.Stat에서 구한 자료를 사용하고, 2018-19년 최저임금은 독일 경제사회연구소가 발간한 최저임금 보고서(*WSI Minimum Wage Report 2018 & 2019*)를 사용했다.

2. 시간당 최저임금

가.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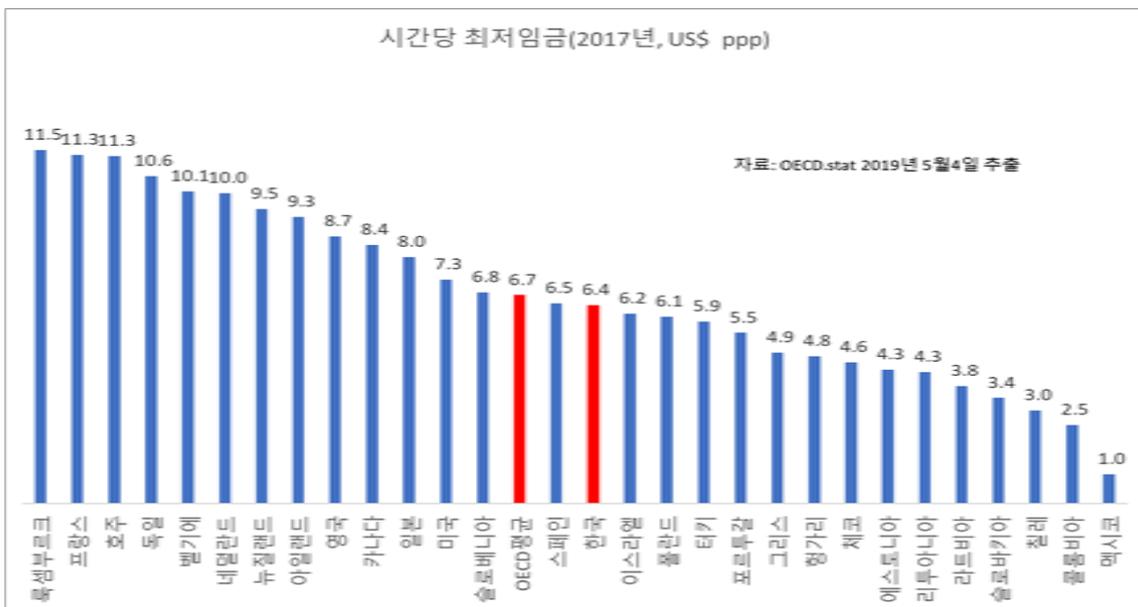
- 2017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5.7달러로 OECD 회원국 평균(6.2달러)보다 0.5달러 낮다. 법정 최저임금 제도를 운용하는 29개 회원국 중 14위로 중간이다. 최저임금이 10달러가 넘는 나라는 호주(13.8달러), 룩셈부르크(13.0달러), 뉴질랜드(11.1달러), 프랑스(11.0달러), 아일랜드(10.4달러), 네덜란드(10.1달러), 벨기에(10.0달러), 독일(10.0달러) 여덟 나라다([그림 1]과 [부표 1] 참조).

[그림 1] OECD 회원국의 시간당 최저임금(2017년, 단위:US\$ 환율기준)



- 구매력 평가지수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6.4달러로, OECD 평균(6.7달러)에 조금 못 미친다. 29개 회원국 중 15위로 중간이다. 최저임금이 10달러가 넘는 나라는 룩셈부르크(11.5달러), 프랑스(11.3달러), 호주(11.3달러), 독일(10.6달러), 벨기에(10.1달러), 네덜란드(10.0달러) 여섯 나라다([그림 2]와 [부표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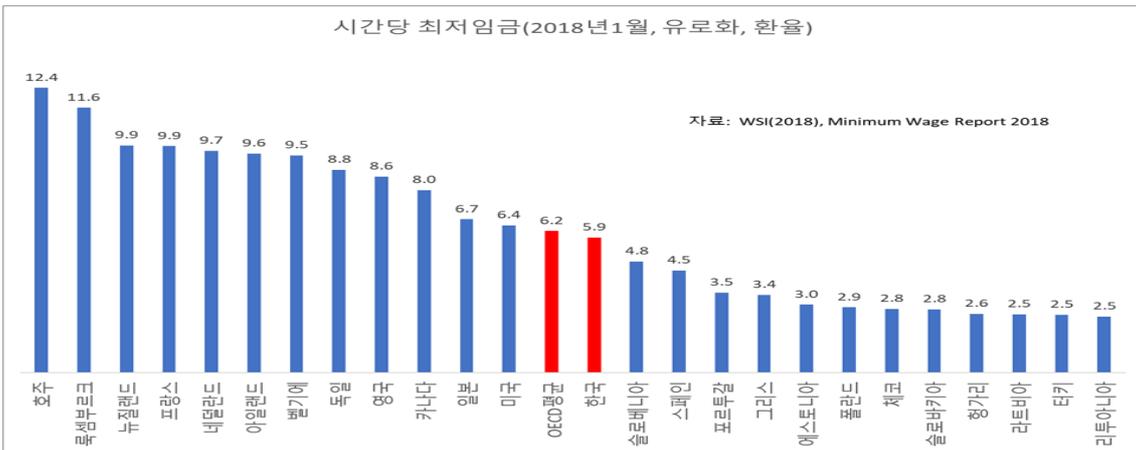
[그림 2] OECD 회원국의 시간당 최저임금(2017년, 단위:US\$ 구매력평가지수기준)



나.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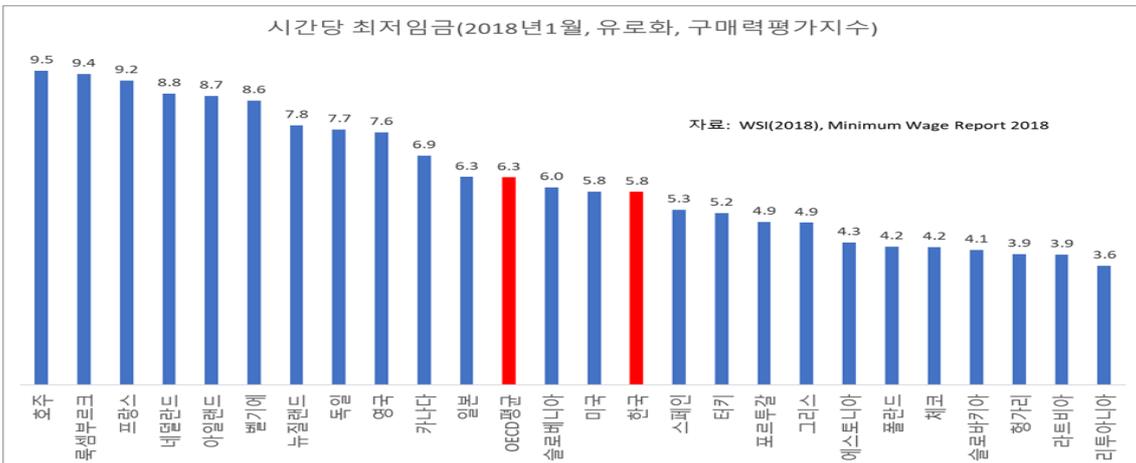
- 법정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된 2018년 1월 한국의 최저임금은 5.9유로로, OECD 회원국의 최저임금 평균(6.2유로)보다 0.3유로 낮다. 한국은 2018년 법정 최저임금이 조사된 25개 회원국 중 13위로 중간이다. 최저임금 10유로가 넘는 나라는 호주(12.4유로)와 룩셈부르크(11.6유로) 두 나라다([그림 3]과 [부표 1] 참조).

[그림 3] OECD 회원국의 시간당 최저임금(2018년, 단위: 유로화, 환율기준)



- 구매력평가지수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5.8유로로, OECD 평균(6.3유로)보다 0.5유로 낮다. 25개 회원국 중 13위로 중간이다. 구매력평가지수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10유로가 넘는 나라는 없고, 9유로를 넘는 나라가 호주(9.5유로), 룩셈부르크(9.4유로), 프랑스(9.2유로) 세 나라다([그림 4]와 [부표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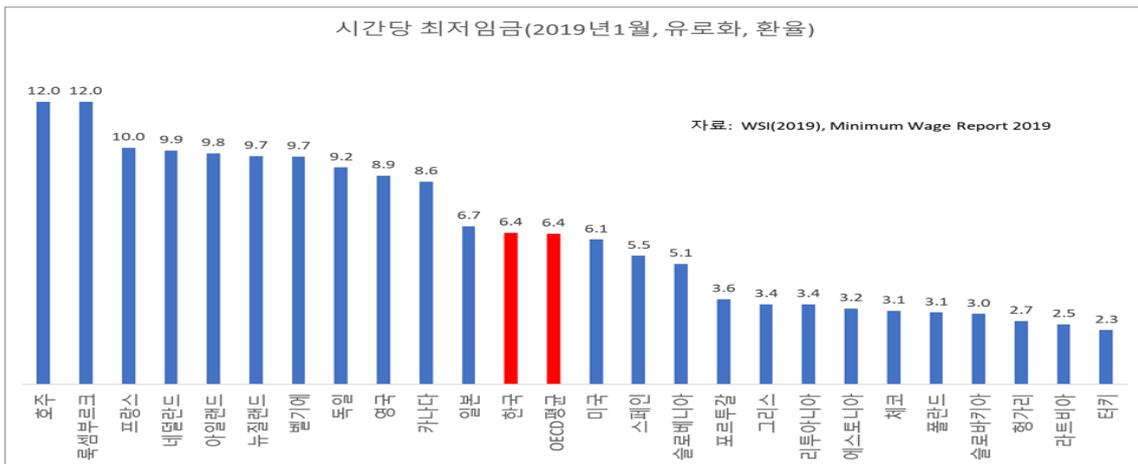
[그림 4] OECD 회원국의 시간당 최저임금(2018년, 단위: 유로화, 구매력평가지수)



다.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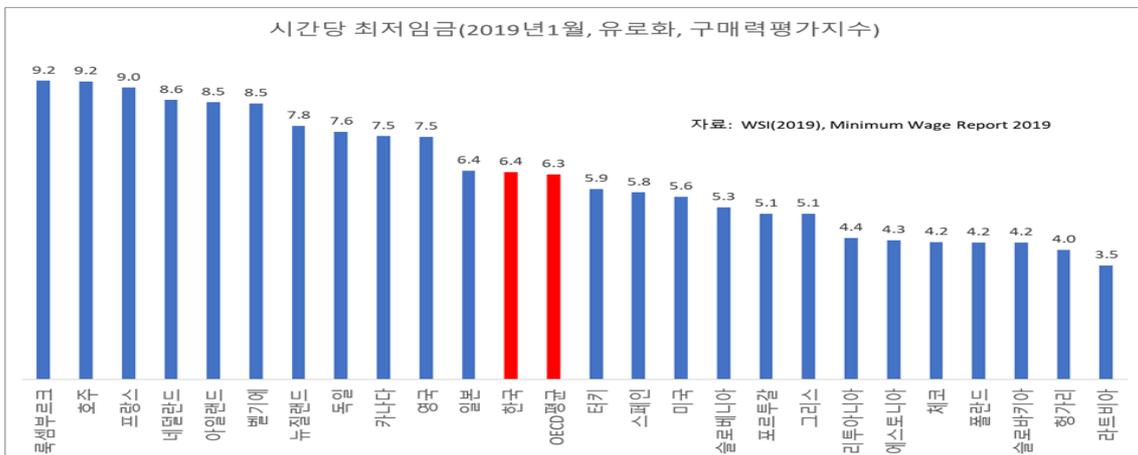
- 법정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인상된 2019년 1월 한국의 최저임금은 6.4유로로, OECD 회원국의 최저임금 평균(6.4유로)과 같다. 2019년 법정 최저임금이 조사된 25개 회원국 중 12위로 중간이다. 2019년 최저임금이 10유로가 넘는 나라는 호주(12.0유로), 룩셈부르크(12.0유로), 프랑스(10.0유로) 세 나라다([그림 5]와 [부표 1] 참조).

[그림 5] OECD 회원국의 시간당 최저임금(2019년, 단위: 유로화, 환율기준)



- 구매력평가지수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6.4유로로, OECD 평균(6.3유로)과 거의 같다. 25개 회원국 중 12위로 중간이다. 구매력평가지수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10유로를 넘는 나라는 없고, 9유로를 넘는 나라는 룩셈부르크(9.2유로)와 호주(9.1유로) 두 나라다([그림 6]과 [부표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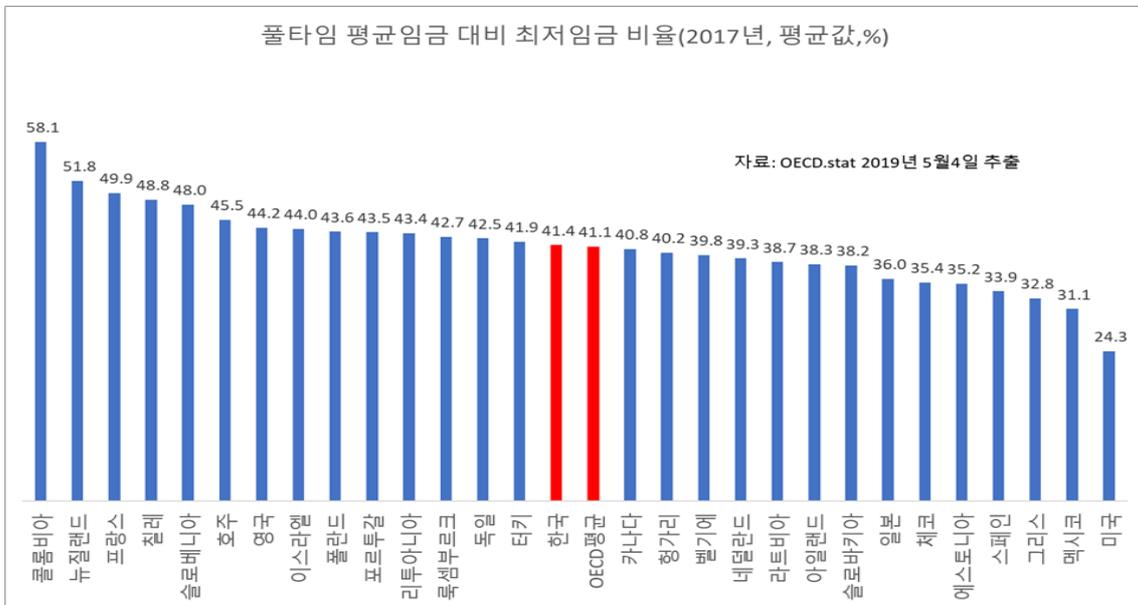
[그림 6] OECD 회원국의 시간당 최저임금(2019년, 단위: 유로화, 구매력평가지수)



3.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 OECD 국가 풀타임 노동자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00년 36.5%에서 2016년 39.9%, 2017년 41.1%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중위값 기준으로는 2000년 45.0%에서 2016년 50.5%, 2017년 52.5%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2000년대 들어 저임금계층이 늘고 임금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IL○ 2008).
-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17년 41.4%로, OECD 회원국 평균(41.1%)과 같다. 법정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OECD 29개 회원국 중 15위로 중간이다. 콜롬비아(58.1%), 뉴질랜드(51.8%), 프랑스(49.9%) 순으로 높고, 멕시코(31.1%)와 미국(24.3%)이 가장 낮다([그림 7]과 [부표 2] 참조)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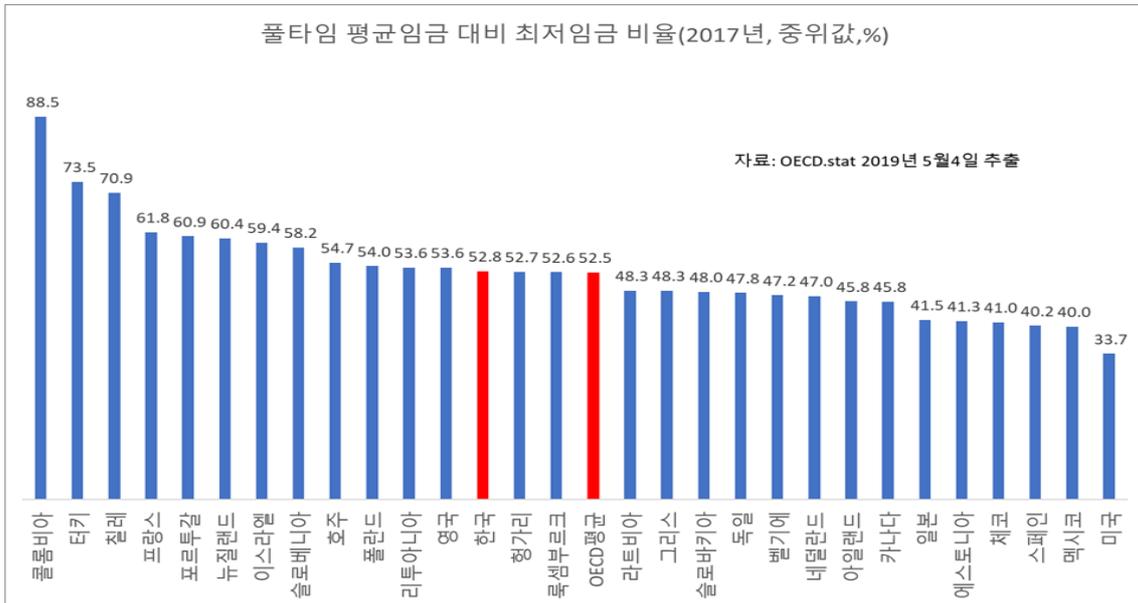
[그림 7] OECD 회원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2017년, 평균값, 단위:%)



1) OECD 37개 회원국 중 법정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29개국이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와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태리 8개국은 법정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지 않고, 독일은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는 노동조합이 실업보험을 관리·운영하는 겐트시스템 때문에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아 굳이 법정 최저임금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태리는 헌법(제36조)의 '적정임금을 받을 권리'를, '모든 노동자는 관련 부문 단체협약 중 가장 낮은 임금을 적용받을 권리가 있다'고 노동법원이 일관되게 해석함에 따라 굳이 법정 최저임금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Schulten 2008). 이들 나라는 모두 임금수준이 높고 단체협약으로 정한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 비교대상을 37개 회원국 전체로 확장했을 때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비율)은 평균값 기준으로는 23위, 중위값 기준으로는 21위로 낮아지게 된다.

-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중위값 기준으로 2017년 52.8%다. OECD 회원국 평균(52.5%)과 거의 같고,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29개 회원국 중 13위로 중간이다. 콜롬비아(88.5%), 터키(73.5%), 칠레(70.9%), 프랑스(61.8%), 포르투갈(60.9%), 뉴질랜드(60.4%) 순으로 높고, 멕시코(40.0%)와 미국(33.7%)이 가장 낮다([그림 8]과 [부표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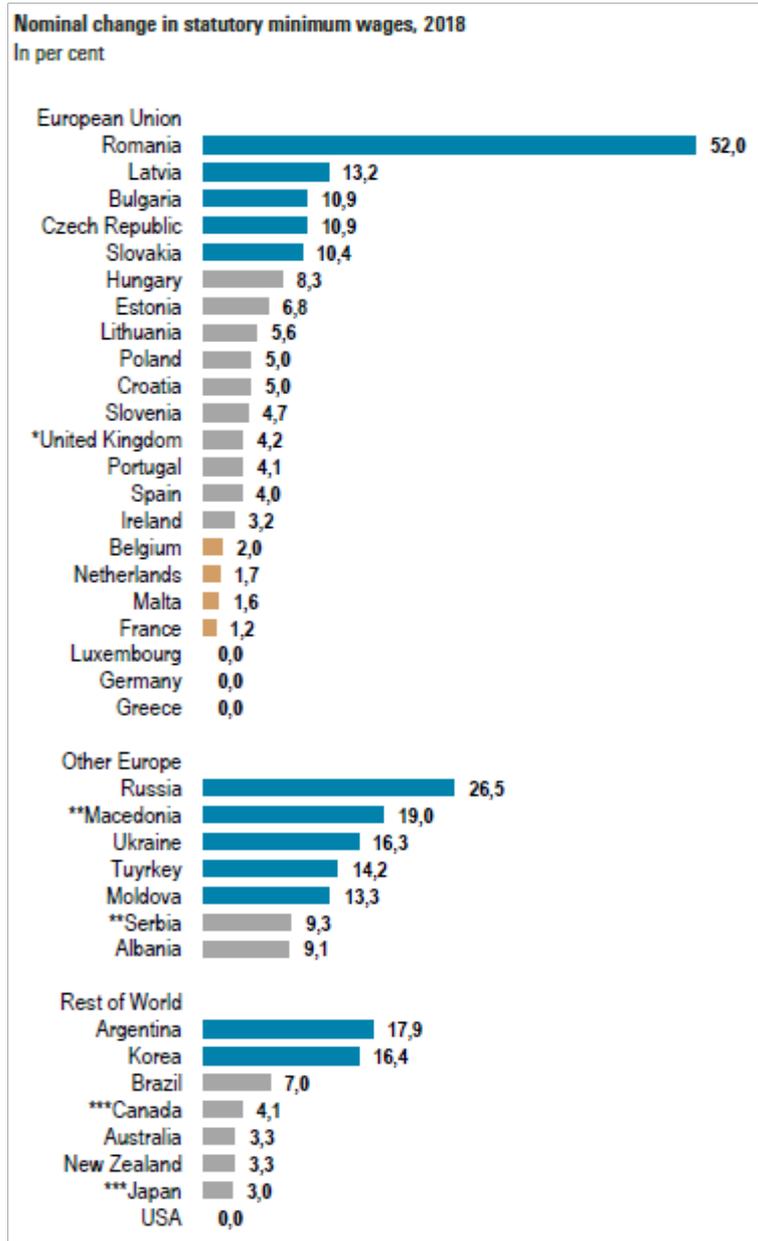
[그림 8] OECD 회원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2017년, 중위값, 단위:%)



4. 최저임금 인상률

-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 16.4%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국내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OECD 회원국 중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리 수인 나라는 한국(16.4%), 터키(14.2%), 라트비아(13.2%), 체코(10.9%), 슬로바키아(10.4%) 다섯 나라다. OECD 비회원국에서는 루마니아(52.0%), 러시아(26.5%), 마케도니아(19.0%), 아르헨티나(17.9%) 네 나라가 한국보다 높았다([그림 9]와 [부표 2] 참조).

[그림 9] 2018년 법정 최저임금인상률(단위:%)



○ 2019년에는 각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리 수인 나라는 리투아니아(38.4%), 터키(26.0%), 스페인(22.3%), 캐나다(12.6%), 한국(10.9%) 다섯 나라다. 한국은 2018년 1위에서 5위로 순위가 낮아졌다. OECD 비회원국에서는 아르헨티나(18.9%), 러시아(18.9%), 우크라이나(12.1%) 세 나라가 한국보다 높았다([그림 10]과 [부표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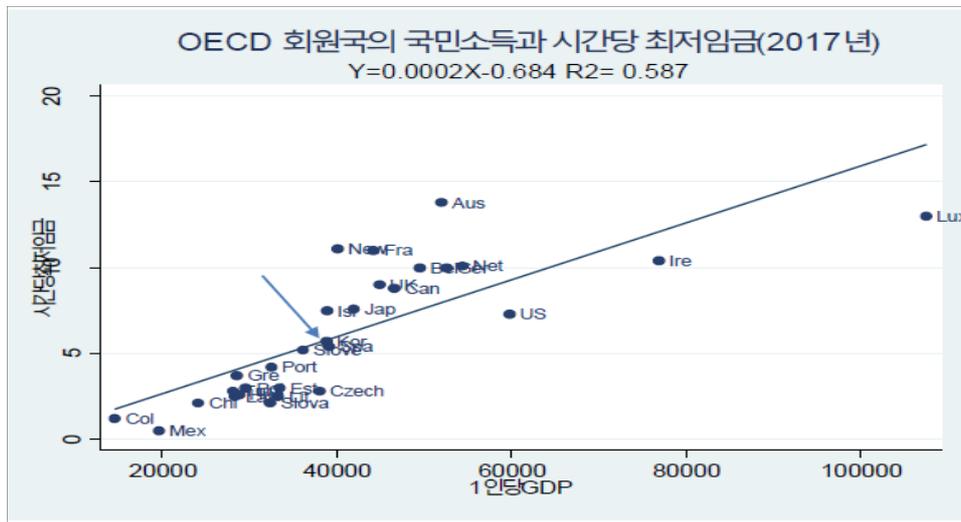
[그림 10] 2019년 법정 최저임금인상률(단위:%)

| Nominal and real changes in statutory minimum wages, 2019 | | | |
|---|---------|-------|------------------------|
| Year-on-year change, as at 1 January 2019, in per cent | | | |
| | Nominal | Real* | Most recent adjustment |
| Lithuania | 38.4 | 34.9 | 01.01.2019 |
| Turkey | 26.0 | 8.3 | 01.01.2019 |
| Spain | 22.3 | 20.2 | 01.01.2019 |
| Argentina | 18.9 | -11.4 | 01.01.2019 |
| Russia | 18.9 | 15.5 | 01.01.2019 |
| Canada | 12.6 | 10.1 | 01.01.2019 |
| Ukraine | 12.1 | 1.0 | 01.01.2019 |
| Korea | 10.9 | 8.0 | 01.01.2019 |
| Bulgaria | 9.8 | 7.0 | 01.01.2019 |
| Moldova | 9.7 | 5.9 | 01.05.2018 |
| Serbia | 9.5 | 7.2 | 01.01.2019 |
| Romania | 9.5 | 5.2 | 01.01.2019 |
| Croatia | 9.0 | 7.4 | 01.01.2019 |
| Czech Republic | 9.0 | 6.9 | 01.01.2019 |
| Albania | 8.3 | 5.9 | 01.01.2019 |
| Slovakia | 8.3 | 5.6 | 01.01.2019 |
| Estonia | 8.1 | 4.5 | 01.01.2019 |
| Hungary | 7.9 | 4.9 | 01.01.2019 |
| Poland | 7.1 | 5.9 | 01.01.2019 |
| Slovenia | 5.2 | 3.2 | 01.01.2019 |
| New Zealand | 4.8 | 1.9 | 01.04.2018 |
| Brazil | 4.6 | 0.9 | 01.01.2019 |
| United Kingdom | 4.4 | 1.9 | 01.04.2018 |
| Germany | 4.0 | 2.1 | 01.01.2019 |
| Luxembourg | 3.6 | 1.6 | 01.01.2019 |
| Australia | 3.5 | 1.5 | 01.07.2018 |
| Portugal | 3.4 | 2.2 | 01.01.2019 |
| Japan | 3.1 | 2.1 | 01.01.2019 |
| Ireland | 2.6 | 1.9 | 01.01.2019 |
| Belgium | 2.0 | -0.3 | 01.09.2018 |
| Malta | 1.9 | 0.2 | 01.01.2019 |
| France | 1.5 | -0.6 | 01.01.2019 |
| Macedonia | 1.5 | -0.3 | 01.07.2018 |
| Netherlands | 1.4 | -0.2 | 01.01.2019 |
| Latvia | 0.0 | -2.5 | 01.01.2018 |
| Greece | 0.0 | -0.8 | 01.03.2012 |
| USA | 0.0 | -2.4 | 24.07.2009 |

5. 최저임금과 국민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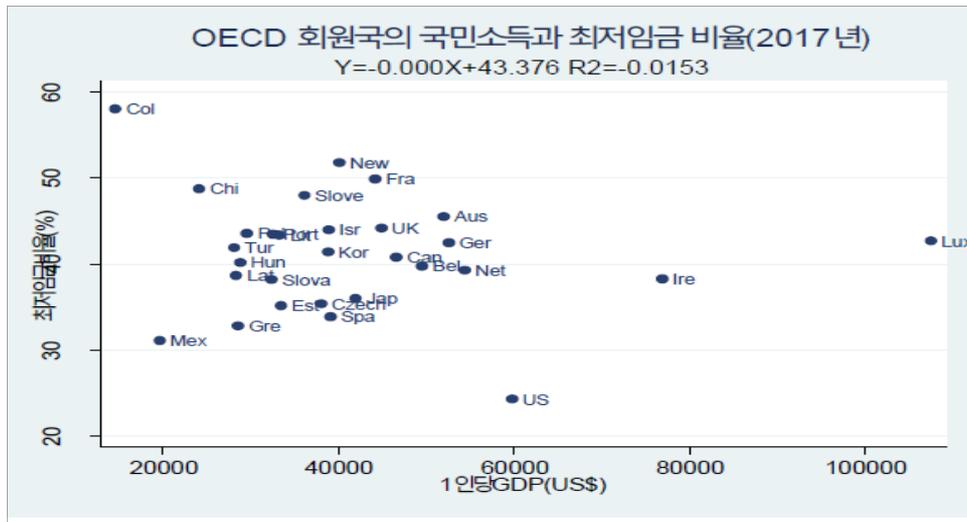
- 국민소득(1인당 GDP)과 시간당 최저임금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국민소득 수준이 높으면 시간당 최저임금도 높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국민소득이 5만2천 달러인 호주는 최저임금이 13.8달러인데, 국민소득이 6만 달러인 미국의 최저임금은 7.3달러밖에 안 된다([그림 11] 참조).

[그림 11] OECD 회원국의 국민소득과 시간당 최저임금(2017년, 단위: US\$)



- [그림 12]에서 국민소득과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다. 국민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뉴질랜드, 프랑스, 슬로베니아, 칠레, 호주, 룩셈부르크는 최저임금 비율이 높고, 일본, 체코, 그리스, 스페인, 멕시코는 최저임금 비율이 낮다.
- 이는 최저임금의 절대수준(시간당 최저임금)은 국민소득이나 경제발전의 영향을 받지만, 최저임금의 상대수준(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국민소득이나 경제발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노사 교섭력, 집권정당의 성격, 사회문화 가치 등 경제외적 요인의 영향을 받음을 말해준다([그림 12] 참조).

[그림 12] OECD 회원국의 국민소득과 최저임금 비율(2017년, 단위: US\$, %)



6. 최저임금과 빈곤선

- OECD(2015)는 최저임금으로 상대적 빈곤선(가구 순소득 중위값의 50%)을 넘어서는데 필요한 주당 노동시간을 보고하고 있다. 호주는 6.5시간 일하면 3인 가구 빈곤선을 넘어서고, 17.9시간 일하면 4인 가구 빈곤선을 넘어서는다. 아일랜드는 8시간 일하면 3인 가구 빈곤선을 넘어서고, 18.8시간 일하면 4인 가구 빈곤선을 넘어서는다. 하지만 대다수 국가는 풀타임 노동해도 4인 가구 빈곤선을 넘어서지 못 한다. 한국은 주 46.4시간 일해야 3인 가구 빈곤선을 넘어서고, 61.6시간 일해야 4인 가구 빈곤선을 넘어서는 수 있다([그림 13] 참조).

[그림 13] 최저임금으로 상대적 빈곤선을 넘어서는데 필요한 주당 노동시간(2013년)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15, Ch.1, Figure 1.16

7. 맺는 말: 요약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WSI(독일 경제사회연구소)의 최신 자료를 사용해서, 한국을 비롯한 OECD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2017년 5.7달러, 2018년 5.9유로, 2019년 6.4유로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2019년에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6.4유로)이고, 순위는 25개국 중 12위로 중간이다([표 1] 참조).
- 둘째,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17년 41.4%로 OECD 평균(41.1%)과 거의 같고, 법정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는 29개국 중 15위로 중간이다. 중위값 기준으로는 52.8%로 OECD 평균(52.5%)과 거의 같고, 29개 회원국 중 13위로 중간이다([표 1] 참조).

[표 1] 시간당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비율

| | 시간당 최저임금 | | | | | | 최저임금 비율 | |
|--------|-------------|-------|---------------|-------|---------------|-------|----------|-------|
| | 2017년(US\$) | | 2018년 1월(유로화) | | 2019년 1월(유로화) | | 2017년(%) | |
| | 환율 | 구매력 | 환율 | 구매력 | 환율 | 구매력 | 평균값 | 중위값 |
| 한국 | 5.7 | 6.4 | 5.9 | 5.8 | 6.4 | 6.4 | 41.4 | 52.8 |
| OECD평균 | 6.2 | 6.7 | 6.2 | 6.3 | 6.4 | 6.3 | 41.1 | 52.5 |
| 한국순위 | 14/29 | 15/29 | 13/25 | 13/25 | 12/25 | 12/25 | 15/29 | 13/29 |

자료: OECD.Stat 2019년 5월 4일 추출; WSI, Minimum Wage Report 2018 & 2019.

주: 최저임금 비율은 풀타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임.

- 셋째,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리 수인 OECD 회원국은 한국(16.4%), 터키(14.2%), 라트비아(13.2%), 체코(10.9%), 슬로바키아(10.4%) 다섯 나라다. OECD 비회원국에서는 루마니아(52.0%), 러시아(26.5%), 마케도니아(19.0%), 아르헨티나(17.9%) 네 나라가 한국보다 높았다.
- 넷째,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리 수인 OECD 회원국은 리투아니아(38.4%), 터키(26.0%), 스페인(22.3%), 캐나다(12.6%), 한국(10.9%) 다섯 나라다. OECD 비회원국에서는 아르헨티나(18.9%), 러시아(18.9%), 우크라이나(12.1%) 세 나라가 한국보다 높다.

- 다섯째, 국민소득과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다. 이는 최저임금의 절대수준(시간당 최저임금)은 국민소득이나 경제발전의 영향을 받지만, 최저임금의 상대수준(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국민소득이나 경제발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노사 교섭력, 집권정당의 성격, 사회문화 가치 등 경제외적 요인의 영향을 받음을 말해준다

[참고1] 한국 정부가 OECD에 보고한 통계 자료와 기준

- 한국의 최저임금 비율이 평균값 기준으로 41.4%(15위), 중위값 기준으로 52.8%(13위)인 것은, 정부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1인 이상 사업체 풀타임(비정규직 포함) 정액급여’ 기준으로 작성한 최저임금 비율을 OECD에 보고하기 때문이다. 통계 자료와 기준을 달리 하면 평균값 기준으로는 30.0~38.5%(20~28위), 중위값 기준으로는 43.5~48.5%(15~23위)로, 그 비율과 순위가 낮아진다([표 2] 참조).

[표 2] 2017년 통계 자료와 기준에 따른 최저임금 비율(순위) 차이

| | | 사업체노동력조사 | | |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 | |
|------------|-------|----------|------|----------|------|-------------|------|----------|------|
| | | 1인이상 상용직 | | 5인이상 상용직 | | 1인이상 풀타임 | | 5인이상 풀타임 | |
| | | 정액급여 | 통상임금 | 정액급여 | 통상임금 | 정액급여 | 통상임금 | 정액급여 | 통상임금 |
| 최저임금 비율(%) | 평균값대비 | 38.2 | 32.7 | 35.5 | 30.0 | 41.0 | 36.1 | 38.5 | 33.2 |
| | 중위값대비 | | | | | 52.4 | 48.5 | 48.3 | 43.5 |
| 순위 | 평균값대비 | 21 | 27 | 23 | 28 | 15 | 22 | 20 | 26 |
| | 중위값대비 | | | | | 15 | 15 | 15 | 23 |

주: 통상임금 = 정액급여+특별급여

- 이 글은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운용하는 29개국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했다. 산업별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8개국까지 포함해서 OECD 회원국 전체(37개국)로 비교대상을 넓히면, 그만큼 한국의 순위는 낮아진다.

[부표 1] OECD 회원국의 시간당 최저임금 비교

| | 시간당 최저임금 | | | | | | 1인당 GDP (2017년 US\$) |
|---------------|-------------|------------|---------------|------------|---------------|------------|-------------------------------|
| | 2017년(US\$) | | 2018년 1월(유로화) | | 2019년 1월(유로화) | | |
| | 환율 | 구매력 | 환율 | 구매력 | 환율 | 구매력 | |
| 호주 | 13.8 | 11.3 | 12.4 | 9.5 | 12.0 | 9.2 | 52,003 |
| 벨기에 | 10.0 | 10.1 | 9.5 | 8.6 | 9.7 | 8.5 | 49,526 |
| 캐나다 | 8.8 | 8.4 | 8.0 | 6.9 | 8.6 | 7.5 | 46,596 |
| 칠레 | 2.1 | 3.0 | | | | | 24,181 |
| 콜롬비아 | 1.2 | 2.5 | | | | | 14,607 |
| 체코 | 2.8 | 4.6 | 2.8 | 4.2 | 3.1 | 4.2 | 38,037 |
| 에스토니아 | 3.0 | 4.3 | 3.0 | 4.3 | 3.2 | 4.3 | 33,493 |
| 프랑스 | 11.0 | 11.3 | 9.9 | 9.2 | 10.0 | 9.0 | 44,191 |
| 독일 | 10.0 | 10.6 | 8.8 | 7.7 | 9.2 | 7.6 | 52,574 |
| 그리스 | 3.7 | 4.9 | 3.4 | 4.9 | 3.4 | 5.1 | 28,580 |
| 헝가리 | 2.6 | 4.8 | 2.6 | 3.9 | 2.7 | 4.0 | 28,799 |
| 아일랜드 | 10.4 | 9.3 | 9.6 | 8.7 | 9.8 | 8.5 | 76,889 |
| 이스라엘 | 7.5 | 6.2 | | | | | 38,886 |
| 일본 | 7.6 | 8.0 | 6.7 | 6.3 | 6.7 | 6.4 | 41,985 |
| 한국 | 5.7 | 6.4 | 5.9 | 5.8 | 6.4 | 6.4 | 38,839 |
| 라트비아 | 2.5 | 3.8 | 2.5 | 3.9 | 2.5 | 3.5 | 28,378 |
| 리투아니아 | 2.5 | 4.3 | 2.5 | 3.6 | 3.4 | 4.4 | 33,325 |
| 룩셈부르크 | 13.0 | 11.5 | 11.6 | 9.4 | 12.0 | 9.2 | 107,525 |
| 멕시코 | 0.5 | 1.0 | | | | | 19,655 |
| 네덜란드 | 10.1 | 10.0 | 9.7 | 8.8 | 9.9 | 8.6 | 54,423 |
| 뉴질랜드 | 11.1 | 9.5 | 9.9 | 7.8 | 9.7 | 7.8 | 40,121 |
| 폴란드 | 3.0 | 6.1 | 2.9 | 4.2 | 3.1 | 4.2 | 29,583 |
| 포르투갈 | 4.2 | 5.5 | 3.5 | 4.9 | 3.6 | 5.1 | 32,554 |
| 슬로바키아 | 2.1 | 3.4 | 2.8 | 4.1 | 3.0 | 4.2 | 32,376 |
| 슬로베니아 | 5.2 | 6.8 | 4.8 | 6.0 | 5.1 | 5.3 | 36,163 |
| 스페인 | 5.4 | 6.5 | 4.5 | 5.3 | 5.5 | 5.8 | 39,087 |
| 터키 | 2.8 | 5.9 | 2.5 | 5.2 | 2.3 | 5.9 | 28,153 |
| 영국 | 9.0 | 8.7 | 8.6 | 7.6 | 8.9 | 7.5 | 44,909 |
| 미국 | 7.3 | 7.3 | 6.4 | 5.8 | 6.1 | 5.6 | 59,774 |
| OECD평균 | 6.2 | 6.7 | 6.2 | 6.3 | 6.4 | 6.3 | 41,214 |
| 한국순위 | 14/29 | 15/29 | 13/25 | 13/25 | 12/25 | 12/25 | 15/29 |

자료: OECD.Stat 2019년 5월 4일 추출; WSI, Minimum Wage Report 2018 & 2019.

[부표 2] OECD 회원국의 최저임금 비율과 인상률 비교

| | 최저임금 비율(%) | | 최저임금 인상률(%) | | | | 최근 조정 일자 |
|---------------|-------------|-------------|-------------|-------------|-------------|------------|-------------------|
| | 2017년 | | 2018년 1월 | | 2019년 1월 | | |
| | 평균값 | 중위값 | 명목 | 실질 | 명목 | 실질 | |
| 호주 | 45.5 | 54.7 | 3.3 | 1.5 | 3.5 | 1.5 | 2019-01-01 |
| 벨기에 | 39.8 | 47.2 | 2.0 | -0.2 | 2.0 | -0.3 | 2018-09-01 |
| 캐나다 | 40.8 | 45.8 | 4.1 | 2.5 | 12.6 | 10.1 | 2019-01-01 |
| 칠레 | 48.8 | 70.9 | | | | | |
| 콜롬비아 | 58.1 | 88.5 | | | | | |
| 체코 | 35.4 | 41.0 | 10.9 | 8.3 | 9.0 | 6.9 | 2019-01-01 |
| 에스토니아 | 35.2 | 41.3 | 6.8 | 3.2 | 8.1 | 4.5 | 2019-01-01 |
| 프랑스 | 49.9 | 61.8 | 1.2 | 0.1 | 1.5 | -0.6 | 2019-01-01 |
| 독일 | 42.5 | 47.8 | 0.0 | -1.7 | 4.0 | 2.1 | 2019-01-01 |
| 그리스 | 32.8 | 48.3 | 0.0 | -1.1 | 0.0 | -0.8 | 2012-03-01 |
| 헝가리 | 40.2 | 52.7 | 8.3 | 5.8 | 7.9 | 4.9 | 2019-01-01 |
| 아일랜드 | 38.3 | 45.8 | 3.2 | 3.0 | 2.6 | 1.9 | 2019-01-01 |
| 이스라엘 | 44.0 | 59.4 | | | | | |
| 일본 | 36.0 | 41.5 | 3.0 | 2.6 | 3.1 | 2.1 | 2019-01-01 |
| 한국 | 41.4 | 52.8 | 16.4 | 14.2 | 10.9 | 8.0 | 2019-01-01 |
| 라트비아 | 38.7 | 48.3 | 13.2 | 10.0 | 0.0 | -2.5 | 2018-01-01 |
| 리투아니아 | 43.4 | 53.6 | 5.6 | 1.9 | 38.4 | 34.9 | 2019-01-01 |
| 룩셈부르크 | 42.7 | 52.6 | 0.0 | -2.1 | 3.6 | 1.6 | 2019-01-01 |
| 멕시코 | 31.1 | 40.0 | | | | | |
| 네덜란드 | 39.3 | 47.0 | 1.7 | 0.4 | 1.4 | -0.2 | 2019-01-01 |
| 뉴질랜드 | 51.8 | 60.4 | 3.3 | 1.5 | 4.8 | 1.9 | 2018-04-01 |
| 폴란드 | 43.6 | 54.0 | 5.0 | 3.3 | 7.0 | | 2019-01-01 |
| 포르투갈 | 43.5 | 60.9 | 4.1 | 2.6 | 3.4 | 2.2 | 2019-01-01 |
| 슬로바키아 | 38.2 | 48.0 | 10.4 | 9.1 | 8.3 | 5.6 | 2019-01-01 |
| 슬로베니아 | 48.0 | 58.2 | 4.7 | 3.2 | 5.3 | | 2019-01-01 |
| 스페인 | 33.9 | 40.2 | 4.0 | 1.9 | 22.3 | 20.2 | 2019-01-01 |
| 터키 | 41.9 | 73.5 | 14.2 | 3.0 | 26.0 | 8.3 | 2019-01-01 |
| 영국 | 44.2 | 53.6 | 4.2 | 1.5 | 4.4 | 1.9 | 2018-04-01 |
| 미국 | 24.3 | 33.7 | 0.0 | -2.1 | 0.0 | -2.4 | 2009-07-24 |
| OECD평균 | 41.1 | 52.5 | 5.2 | 2.9 | 7.6 | 4.9 | |
| 한국순위 | 15/29 | 13/29 | 1/25 | 1/25 | 5/25 | 5/25 | |

자료: OECD.Stat 2019년 5월 4일 추출; WSI, Minimum Wage Report 2018 & 2019.

주: 최저임금 비율은 폴타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임.